



# 안세회계법인 · 829-7575

## 세계재경저널 Answer

eAnSe.com ··· 2022/2/14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과와 稅計·經營戰略

### 창업자·회장·최고경영자 등의 고액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소득세 계산규정

1. 창업자의 퇴직시 받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별도소득 분리함 : 2개의 세목구분으로 낮은세금 적용
2. 퇴직급여는 근속기간의 연분연승법 적용(근속기간으로 나눔)으로 낮은세율 적용됨.
3. 퇴직금 지급액 중 소득세법상 낮은세금의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축소규정됨(소득세법 제22조 제3항)
  - 1)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임원 퇴직금 규정상의 퇴직금 지급배율 모두 인정(예시 : 창업자 등 5배수)
  - 2)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 연간지급배율 3배수까지만 인정
  - 3) 2020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 연간 지급배율 2배수까지 인정, 초과분은 근로소득임.
4. 계산사례 : 근무기간(예시 : 2003. 1. 1~ 2022. 12. 31.까지 20년 근속 가정) 3년간 평균연봉 3억원, 퇴직금 25억원 지급
  - 1) 퇴직소득인정금액 : 3억원 × 10% × (9년 × 5배 + 8년 × 3배 + 3년 × 2배) = 22.5억원
  - 2) 초과액은 퇴직시점의 근로연봉임. 25억 - 22.5억원 = 2.5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최소 6천6백만원임.
5. 퇴직소득 인정금액 22.5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계산(소득세법 제48조)
  - 1) 환산퇴직급여 : (22.5억 - 20년 근속공제 1,200만원) ÷ 20년 × 12 = 1,342,800,000
  - 2) 표준화된 환산급여 차등공제 후 퇴직소득과세표준 : 환산급여 1,342,800,000원 - 환산급여공제 (100~35%) 516,480,000원 = 퇴직소득과세표준 826,320,000원
  - 3) 누진세율 적용 후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 : 826,320,000원에 6~45% 적용 : 5억원까지 170,600,000 + 5억 초과액의 42% 137,054,400 = 307,654,400 ÷ 12 × 20년 = 512,757,333 × 1.1 = 564,033,066원
6. 퇴직소득공제(소득세법 제48조)의 표준화된 환산급여공제
 

800만원까지는 100%, 800~7천만원까지 : 800만원 + 초과액의 60%, 7천만~1억원 : 4520만원 + 7천만원 초과액의 55%

1억~3억 이하 : 6,170만원 + 1억원 초과액의 45%, 3억 초과 : 1억5,150만원 + 3억원 초과액의 35%